

# 창업동아리 운영지침



[제정 2021.09.15.] [개정 2021.10.06.] [개정 2022.02.23.]

## 제1조 (목적)

본 지침은 동명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단(이하 "사업단"이라 한다) 창업동아리 지원 사업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## 제2조 (정의)

재학생들의 참신하고 독창적인 우수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사업화를 유도함으로써 창업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미래 청년 벤처 기업가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한다.

## 제3조 (구성)

본교 창업동아리는 다음 각호의 자격요건을 갖추어 구성할 수 있다.

- 가. 창업동아리는 동명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한다. 단 사업단장의 승인하에 이미 창업한 학생도 선발 대상이 된다.
- 나. 창업동아리 회원은 지도교수 1인 이상과 학생 10인 이하로 구성되며 학생은 사업단의 지원을 받는 타 창업동아리에 중복해서 가입할 수 없다.
- 다. 회원의 자격은 졸업과 동시에 상실한다.

## 제4조 (신청)

- 가. 창업동아리로서 등록(신규·재등록을 포함한다) 하고자 할 때는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구비서 류를 SW산학융합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.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다.
  - 1) 별지 [제1호 서식] 창업동아리 참가 신청서 1부.
  - 2)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.
- 나. 창업동아리의 신청접수는 상시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.

제5조 (승인) 창업동아리의 승인은 매 분기(1월, 4월, 7월, 10월) 둘째 주에 SW사업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사업단장이 결정한다.

#### 제6조 (동아리 지원 범위)

- 가. 사업단은 창업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활동운영비를 지원한다.
- 나. 활동운영비의 한도는 금10,000,000원(금일천만원정)으로 한다.
- 다. 추가적인 활동운영비가 필요시 사업단장의 승인 후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.
- 라. 활동운영비는 기자재구입비, 출장비, 인쇄유인물비, 전문가활용비, **회의비**, 수수료 및 제세공과 금, 재료비, 시제품제작비, 소프트웨어개발자등록비, 통신판매업등록면허세, **창업 주소지 등록 지원**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지도교수의 서명을 득한 후 지원한다.
  - 1) 시제품 제작 시 시제품에 대한 시제품제작계획서, 시방서, 견적서, 비교견적서 등의 구비서류를 제작 전 SW산학융합센터에 제출해야 한다.

- 2)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할 시 전문가활용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전문가활용비는 활동운영비의 20%를 초과할 수 없다.
- 3) 기자재구입비는 본교 물품관리규정에 따른다.
- 4) 모든 구매행위 이전에 재료구입신청서를 제출하여 반드시 지도교수의 확인 및 서명이 필요하다.
- 5)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집행하지 않으며, 기집행된 것은 환수 조치한다.
- 6) 소프트웨어개발자등록비, 통신판매업등록면허세, 창업 주소지 등록 지원을 할 수 있다.(개정 2021.10.06.)
- 7) 창업동아리 지도교수나 소속 학생이 관련 업무로 출장 시 여비는 본교의 여비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.
- 8) 창업동아리 지도교수 참여하에 활동운영비의 최대 10%를 회의비로 사용할 수 있다.(개정 2021.10.06.)
- 마. 활동운영비는 창업동아리 집행지침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.
- 바.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업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- 사. 창업동아리 중 정부·민간단체에서 지원하는 창업지원 사업(일반투자) 등 선정 시 지원금은 해당 창업동아리에 귀속하며 SW중심대학 단장 이름으로 지원금의 일부(최대 10%를 넘을 수 없음)를 포상금으로 지급 할 수 있다.(개정 2022.02.23.)
- 아. 창업동아리 중 활발한 사업 진행 혹은 그에 준수한 활동(법인등록, 직원 채용, 해외진출, 타 기업과 협력 진행 등)을 하는 창업동아리는 SW중심대학 단장 이름으로 추가 지원할 수 있다.(개정 2022.02.23.)
- 자. 위 사, 아 항은 SW중심대학 사업단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지원금(포상금)을 결정한다.(개정 2022.02.23.)

## 제7조 (활동 및 결과 보고)

- 가. 창업동아리는 승인 후 6개월 이내 창업을 해야 한다.
- 나. 사업단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 및 협조하여야 한다.
- 다. 지도교수 및 참여 인원, 팀명, 창업 아이템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창업동아리 변경신청서를 SW 산학융합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라. 창업동아리 활동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SW산학융합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.
  - 1) 창업동아리 활동보고는 선정 후 매 분기(3개월) 첫째 주 금요일에 창업동아리 분기별 보고서를 작성한 후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사업단에 제출한다.(개정 2021.10.06.)
  - 2) 각종 교육 및 경진대회 참가 시 참가 지원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고 해당 프로그램 종료 시참가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.
  - 3) 창업동아리 활동을 중단하는 학생은 탈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.
  - 4) 창업동아리 종료 시 창업동아리 최종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.
- 마. 사업단에서 주최하는 SW창업캠프에 모든 동아리 인원은 최소 1회 이상 참여를 해야 한다.(개정 2021.10.06.)

## 제8조 (장학금 및 마일리지)

가. 각종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받은 수상금은 해당 창업동아리에 귀속한다.

나. 창업동아리 참여시 구성원 1인당 분기별로 활동보고서 제출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구성원에게 사업단 마일리지 5점을 지급한다.

## 제9조 (변경통보의무)

창업동아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 및 사유서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산학융합센터에 신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- 가. 승인받은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
- 나. 창업동아리 학생 또는 지도교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
- 다. 기타 주요한 창업동아리 운영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

## 제10조 (등록의 취소)

등록한 창업동아리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 또는 불허할 수 있다.

- 가. 본교의 명예를 손상시켰을 경우
- 나. 학칙 또는 본 지침을 위반한 경우
- 다. 동아리 활동내용이 설립목적과 다르다고 판단될 경우
- 라. 활동실적 보고를 불성실하게 하거나, 이행하지 않을 경우
- 마. 기타 창업동아리 활동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## 제11조 (기자재 귀속)

창업동아리 운영비로 구입된 모든 기자재는 창업동아리 해산과 동시에 반납하여야 한다.

#### 제12조 (기타)

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단장이 따로 정한다.

부칙

- 이 규정은 2021년 09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- 이 규정은 2021년 10월 06일부터 시행한다.
- 이 규정은 2022년 02월 23일부터 시행한다.